

「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-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6. 11. 21(월) 평창군수(산림과장)
- 회부일자 : 2016. 11. 25(금)
- 상정일자 : 2016. 12. 07(수) 제224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산림과장 김철환)

- 산불방지 및 진화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지원조례를 제정하여, 산불방지 및 진화활동에 협조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류지웅)

- 본 조례안은 산불로부터 우리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
- 주요 내용을 보면
 -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, 정의, 적용범위 등을 규정
 -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및 산불방지 지원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고
 -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보상금과 보조금의 관리에 대하여 규정 하였음.

○ 검토의견

본 조례안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진화활동에 협조하는 개인·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,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,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

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산림보호법」에 따라 산불로부터 평창군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단체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방지 자생단체를 말한다.

1. 「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
2. 그 밖에 목적과 설립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진 법인 또는 단체 중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인정하는 단체

제3조(적용범위) 산불방지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4조(책무) 군수는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.

제5조(산불방지 지원) 군수는 「산림보호법」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를 위하여 활동하는 개인·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개인(이장) 산불방지 보상금
2. 산불방지 자생단체 산불방지 보조금

제6조(보상금의 관리) 제5조제1호 보상금의 지급대상·지급액·지급조건·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군수가 정한다.

제7조(보조금의 관리) 제5조제2호 보조금의 신청·교부·정산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